

문서번호	생활보장과-1131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보장과장	주민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6. 1. 9.						2026. 1. 9.
결재일자	2026. 1. 9.	송아롱	권영중	박찬선	권미진	서경현	류규하
공개여부	대국민 공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도시 중구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운영계획

< 주 요 내 용 >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계속사업)

☐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급여액)
긴급활동지원	법정급여 미수급자	월 120시간(2,073천원)
	법정급여 수급자	월 60시간(1,037천원)
탈시설장애인		월 40시간(691천원)
최중증장애인	시 추가지원 수급자	월 20시간(346천원)
	시 추가지원 미수급자	월 40시간(691천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월 40시간(691천원)

☐ 예상인원 : 34명정도

☐ 급여기준 : 시간당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주요서비스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 '26년 사업예산 : 200,000천원(구비 100%)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 수수료 3,300천원 별도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운영계획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법정급여 시간 외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를 추가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2. 추진경과

- '19. 10월 :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 8. 1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 8. 21. : 사업시행
- '20. 9월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관내 활동지원기관 5개소)
- '21. 11월~'22. 2월 : 지원내용 확대 등 사업 변경 제안 및 협의
(420연대 ⇔ 대구시 8개 구·군)
- '22. 6~8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2. 10. 1.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변경
- ~ 현재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지속 추진(계속사업)

Ⅱ 사 업 현 황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인 원(예산)	예 산 액	재 원 비 율
계	466	10,738,483	
장애인활동지원(법정급여)	314	8,692,251	국비 70%, 시비 30%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68	1,377,664	시비 100%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34	200,000	구비 100%
활동보조 가산급여	50	468,568	국비 70%, 시비 30%

※ 법정급여·시 추가지원사업 지원 후, 구 추가지원사업으로 보충 지원하며 중복대상자는 매월 생성되는 급여를 국-시-구비 순으로 사용

○ 연도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대 상 자	29	32	34
예 산 액	100,000	130,000	130,000

* '22.10월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변경으로 인해 2023년 대상자 수 증가

○ 동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34	-	-	1	2	-	1
	남산1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대봉1동	대봉2동
	-	-	2	27	-	1

○ 지원유형별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단위 : 명)

구 분(지원시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7*	39*	38*
① 긴급활동지원	법정급여 미수급자 : 120H		-
	법정급여 수급자 : 60H		-
② 탈시설장애인(40H)		14	16
③ 최종증장애인	시 추가지원 수급자(20시간)	4	5
	시 추가지원 미수급자(40시간)	8	7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시간)		11	11

* 2유형 이상 중복지원자가 있어 연도별 대상자 수와 상이함

III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연례반복 계속사업)
- 지원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 미생성 기간 해당자
② 탈시설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퇴소자 ※ 단, 해당 보장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부여함.
③ 최종증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결과 X1(기능제한) 점수 360점 이상(아동의 경우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종증장애인 항목(20시간) 수급자의 경우 20시간 지원(시 추가지원 우선 신청 필수)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독거·취약, 보호자 지원불능 가구 등

- 지원시간 :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346천원)~120시간(2,073천원)의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차등 지원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등), 방문목욕
- 지원단가 : 시간당 17,270원(심야·휴일의 경우 시간당 25,900원)
※ 법정급여 단가와 동일하며 본인부담금 없음
- 추진방법
 - 사업비 예탁 : 구 → 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기관
※ 법정급여 및 시 추가지원급여 소진 후 이용, 구 추가지원 급여 이월 불가
- 사업예산 : 200,000천원(구비 100%)
※ 사회보장정보원 업무위탁수수료 3,300천원 별도
※ 세출예산 항목 :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IV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내용

지 원 대 상 (신청자격)		월 지원시간 (바우처 급여액)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60일	법정급여 미수급자	120시간 (2,073천원)	긴급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법정급여 수급자	60시간 (1,037천원)		
② 탈시설장애인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40시간 (691천원)	시설퇴소 증명서, 자립주택 입주 확인서(해당 시)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③ 최종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20시간 (346천원)	동 확인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40시간 (691천원)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 2년, 필요시 연장		40시간 (691천원)	동 확인,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항목 ① - 법정급여 미수급자” 외 모든 항목은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에 한함

※ “항목 ① - 법정급여 미수급자 긴급활동지원” 신청 시 법정급여 긴급활동지원 가능여부 선 검토 필요

※ 중복지원 불가항목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 [붙임 2] 시 추가지원사업 지원대상 참고

※ 백원단위에서 올림하여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긴급활동지원 대상자의 범위

-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 사유가 소멸 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 시설 퇴소 후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바우처 미생성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간 지원

- 자격처리 방법

- 지원기간 : 최대 60일
- 긴급사유소멸 시 그 다음날 부터 자격중지 처리
- 법정급여 미수급자는 긴급활동지원급여 단독으로 신청 불가
(법정급여 신규신청과 동시신청 필수)
- 법정급여 미수급자가 수급자로 판정될 경우 법정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지급
- 법정급여 미수급자가 긴급활동지원시간(120시간)이 추후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보다 많을 것을 예상하여 종합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급 자격을 받지 않기 위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반복적인 종합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조사원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함]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 수급자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발달장애인, 자립주택 생활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중점 사례관리대상 장애인 우선 지원)
-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

2. 신청 및 접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 제출서류 : [붙임1] 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3.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심의시기 : 매월(필요 시)
- 심의대상 :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신청분 원칙
 - ※ 단, 긴급활동지원 신청 대상자는 선지원 후 심사
- 심의내용 : 추가지원 여부, 개인별 월급여액(시간) 등
 - ※ 구 예산 배정금액 범위 내 대상자 결정 및 급여 지원

4. 지원방법 및 수급자격 확인

○ 지원절차

신 청 (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대상자)	서비스 비용 지급 (구→사회보장정보원 →제공관)
-------------------	-----------------------------	---------------------------	----------------------------------

- 사업비 예탁 : 구 → 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격 확인

- 매월 자격 여부 수시 확인
- 중구 외 주소지로 전출 시 : 구 추가지원 급여 중지(중지사유 : 판정결과변경)
※ 전출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갱신신청

- 동 : 종료일 60일 이전 갱신신청 안내(긴급활동지원 제외) 및 신청 접수 후 생활보장과로 공문 제출
- 구 : 신청자격 확인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갱신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
- 갱신신청 결과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 변경되는 유효기간은 기존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다시 산정

※ 본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처리함

V 기대 효과

- 최중증 · 위기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
-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공공책임 돌봄 체계 구축

VI

행정사항

○ 생활보장과

- 매월 예약금 정산내역 모니터링 및 예산반영(필요 시)
- 중구 소식지 및 언론보도를 활용한 홍보

○ 각 동

- 신규 지원 가능 대상자 신청 안내 및 접수
- 수급자격관리(종료일 도래 및 지원사유 해소여부 등)

○ 활동지원기관

- 이용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신규 서비스 수요자 발굴 및 홍보

- 붙임 1.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신청서(서식)
2. 장애인활동지원 시(市) 추가지원 지원대상(참고)
3.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 교육기관 현황

[붙임 2]

장애인활동지원 시(市) 추가지원사업 지원대상 ※ 중복지원 자격 관련

□ 서비스 종합조사 1~6구간(종합조사 점수 315점 이상) 활동지원수급자

※ 단, '⑤ 탈시설장애인(최근 3년 이내)' 항목은 법정급여 활동지원수급자(1~15구간),
'⑪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항목은 별도표 상세 기재

○ 월급여액 : 월 346,000원 ~ 3,454,000원(20~200H) / 200H 초과 불가
- 단, 1일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최중증장애인 :
230H 추가 지원(총 7,427,000원, 430H)

○ 지원내용 : 해당 항목별 월급여액 가산 지원

지 원 대 상 (신청자격)	월 지원 급여(시간)	제 출 서 류	중복지원 불가항목
① 사지마비 와상(24시간 호흡기장착 포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 지원함(추가) · ①-1 : ①중 종합조사 1~4구간의 기능제한(X1) 영역 점수 430점 이상 독거 : 1,829,000원(110H)가산, (총2,992,000원, 180H)	1,209,000원 (70H)	연금공단 확인서, 진단서 등	⑦
② 희귀난치성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희귀난치성질환)	346,000원 (20H)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③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346,000원 (20H)	읍·면·동 확인	독거 : ④, ⑥ 취약 : ⑥
④ 중증장애인 외 남은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346,000원 (20H)	증명서 등	③(독거), ⑥, ⑦
⑤ 탈시설장애인(최근 3년 이내) (서비스 종합조사 1~15구간 대상자)	691,000원 (40H)	시설퇴소 증명서	
⑥ 최중증장애인(독거 및 취약 제외)	346,000원 (20H)	읍·면·동 확인	③, ④
⑦ 직장생활 장애인	346,000원 (20H)	재직증명서	①, ④
⑧ 욕창장애인	691,000원 (40H)	진단서 등	
⑨ 중복장애인(부장애 심한 장애인 경우, [기존]부장애 2급 이상, 발달은 3급이상)	346,000원 (20H)	장애진단서	
⑩ 최초 장애등록시 당뇨합병증에 의한 장애인	346,000원 (20H)	장애진단서, 진단서 등	
⑪ 구청장·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사지마비 와상이동인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1~7구간 대상자)	346,000원 ~691,000원 (20H~40H)	관련서류	
⑫ 1일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최중증장애인(추가) · ①-1 을 충족하는 사지마비 와상(24시간 호흡기 착용 포함) 최중증장애인으로서 선정기준에 따라 구·군(수급자격심 의위원회)에서 1일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자	3,973,000원 (230H)	관련서류	①(①-1), ③외 중복지원 불가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360점(아동 280점) 이상

- 취약가구 :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붙임 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현황

(2025.12월 기준)

구군	유형	지원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일	연락처
계	55개소	(활동보조 51, 방문목욕 4)				
중 구 (5)	활동보조	대구시장애인재활협회	달구벌대로 1960, 103동(남산휴먼시아)	신상운	2019.05.01	255-8166
	활동보조	사회복지법인 대구남산복지재단	이천로 204-1, 6층(대봉동)	박기경	2011.10.05	425-7978
	활동보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명덕로 99(남산동)	노금호	2011.10.05	295-4240
	활동보조	대구시시각장애인연합회	명덕로 165(남산동)	김재룡	2019.05.01	253-2755
	활동보조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동덕로 61(대봉동)	최형석	2011.10.05	954-0170
동 구 (6)	활동보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동내로21 SH빌딩(신서동)	박명애	2011.10.05	953-9460
	활동보조	사회복지법인한사랑	경안로755, 3층(동호동)	윤문주	2011.10.05	943-0448
	활동보조	좋은사람사회적협동조합	화랑로 459, 4층(용계동)	전기만	2023.09.15	216-0064
	활동보조	가온사회적협동조합	안심로 22길 60-11, 6층(율하동)	김기택	2023.09.15	655-4000
	활동보조	더함사회적협동조합	아양로 41길 30-15, 3층(신암동)	구미신	2024.09.02	944-9294
서 구 (5)	방문목욕	대구케어25	화랑로80길 57, 1층(방촌동)	이필순	장기요양	743-0360
	활동보조	대구서구지역자활센터	달구벌대로377길 12-10(내당2.3동)	장애란	2011.10.05	555-4848
	활동보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옥산로6길 9(원대동3가)	박진필	2011.10.05	353-8310
	활동보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서대구로 72, 6층(평리동, 세현빌딩)	서준호	2011.10.05	562-1213
	활동보조	대구서구종합사회복지관	달구벌대로 365길 3(내당1동)	이한성	2022.07.01	563-0777
남 구 (6)	방문목욕	실버안심노인복지센터	북비산로 353-12, 1층(비산동)	유선영	장기요양	555-3881
	활동보조	대구재활복지센터(구. 밝은내일회)	대명로 72, 6층(대명동)	정유정	2011.10.05	623-0054
	활동보조	대구시장애인부모회	중앙대로 228(대명동)	손소희	2011.10.05	621-2602
	활동보조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회 대구지부	현충로 231(대명동)	이현우	2011.10.05	654-7775
	활동보조	꿈터장애인활동지원센터	현충로19길 43(대명동)	박노익	2019.06.28	623-8288
북 구 (7)	활동보조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양지로 118(대명동)	최창현	2019.06.28	657-9090
	활동보조	보경활동지원센터	앞산순환로 539, 302호(대명동)	이흥우	2019.06.28	216-4172
	활동보조	상록노성마비복지관	연암로42길 77(산격동)	조재삼	2011.10.05	382-0960
	활동보조	강북장애인주간보호센터	구암로60길 46-17(구암동)	노현주	2011.10.05	311-3430
	활동보조	대구광역시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칠곡중앙대로 447, 4층(관음동)	정병주	2020.07.07	311-2172
수성구 (9)	활동보조	대구희망복지재단	칠곡중앙대로 497, 3층(관음동)	채동수	2022.08.30	323-4600
	활동보조	대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신암로 31, 3층(칠성동1가)	오미형	2022.08.30	252-8277
	활동보조	사회복지법인 효성복지재단	도남길 92-52(도남동)	전미조	2025.06.01	327-3200
	활동보조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북현로34길 17-8(북현동)	변상길	2025.06.01	957-8310
	활동보조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파동로51길 26-17(파동)	정은경	2011.10.05	763-1011
달서구 (8)	방문목욕	대구요양노인복지센터	수성로19길 51, 1층(상동)	황주성	장기요양	756-5515
	활동보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명덕로 411, 7층(수성동2가)	김경숙	2011.10.05	751-6902
	활동보조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	명덕로 384 (수성동1가)	이경순	2011.10.26	762-8520
	활동보조	세움	청솔로 41, 1층(황금동)	김훈정	2021.09.07	764-9777
	활동보조	사람과희망사회적협동조합	범안로 6(범물동)	박원식	2022.08.01	783-1113
달성군 (7)	활동보조	시지장애인활동지원센터	달구벌대로 3173, 5층(매호동)	이경순	2024.11.01	795-8520
	활동보조	동행사회적협동조합	알파시티1로 273, 1001호(대흥동)	안경숙	2024.11.01	242-7707
	활동보조	사)발달장애인자립지원협회	지범로 60, 1층(지산동)	박용원	2024.11.01	766-9888
	활동보조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	달구벌대로 291길 100 (용산동)	최형석	2011.10.05	527-0227
	활동보조	대구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달구벌대로 291길 100 (용산동)	송영호	2011.10.05	527-0350
군위군 (2)	활동보조	대구시시각장애인복지관	달구벌대로 291길 100 (용산동)	정수환	2011.10.05	526-9988
	활동보조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마로 251(성당동)	김재진	2011.10.05	633-8001
	활동보조	달서활동지원센터	월배로 328, 3,4층(송현동)	권애경	2020.02.21	657-2287
	활동보조	청인달서센터	월곡로 184, 204호(상인동)	이경순	2024.04.20	637-8021
	활동보조	사회적협동조합사람과사람	월암로4길 10(월성동)	김순우	2025.01.01	262-6002
달성군 (7)	활동보조	가온사회적협동조합 다운센터	달구벌대로308길 30, 133-2호(감삼동)	김기택	2025.01.01	793-8008
	활동보조	달성군장애인복지관	논공읍 논공로 242(남리)	윤정아	2011.10.05	616-0260
	활동보조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화원읍 성화로 9(명곡리)	권재환	2011.10.05	639-6971
	활동보조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16(매곡리)	오복환	2011.10.05	588-6603
	활동보조	사)대구광역시 장애인자립협회	다사읍 대실역북로5길 12(매곡리)	우현숙	2013.03.01	588-8640
달성군 (7)	활동보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읍 대실역북로1길 5-1, 2층	김병관	2019.06.10	585-1577
	활동보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	유가읍 테크노산업로 120 엠스케어 3층	김효현	2019.06.10	617-5112
	활동보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사람인화정센터	화원읍 비솔로 2463, 402호	오대진	2020.12.11	761-5112
	활동보조	군위지역자활센터	군위읍 중앙길 31-10	박현효	2011.10.05	054-383-6900
	방문목욕	대한노인가센터	군위읍 동서5길 20	홍명동	장기요양	054-382-1125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한국인권행동	허영철	중구 공평로 59 우원빌딩 7층(공평동)	428-2114 (fax 428-2115)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대구지부	손수진	북구 대현로 117, 대영빌딩 2층(대현동)	422-1800~2 (fax 422-1803)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서준호	서구 서대구로 72, 세현빌딩 6층(평리동)	562-1213 (fax 561-1213)	